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민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066

발의년월일 : 2020년 12월 1일

발 의 자 : 양민규 의원(1명)

찬 성 자: 박순규, 장인홍, 황인구,

이호대, 전병주, 홍성룡, 서윤기, 김경영, 이정인,

유 용, 김경우 의워

(11명)

1. 제안 이유

○ 최근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법 제화됨에 따라 동 조례의 정의규정을 상위법률에 따라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률에 따라 규정함(안 제2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나목"을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9호나목"으로, "것으로 전동휠, 전동퀵보드 등 소형·저속의 이동장치를"을 "것으로서 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라 정하는 것을"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도로교통법」"을 "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제2조(정의)
이동장치"란 <u>「도로교통법」 제</u>	
<u>2조제19호나목</u> 의 원동기장치자	(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
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	9호나목
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	
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	
그램 미만인 <u>것으로 전동휠, 전</u>	<u>것으로서 법 제</u>
동퀵보드 등 소형·저속의 이동	2조제19의2호에 따라 정하는
<u>장치를</u>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생 략)	<u>것을</u>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같음)
② 시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	2
용함에 있어 <u>「도로교통법」</u> 에	<u>법</u>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	
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률에 따른 개정 사항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양민규 의원(02-2180-8456)